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근거 신설〉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71호)

2024. 1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노종면 · 황정아 · 김성환 · 박홍배 · 김윤덕 · 김교홍
문금주 · 윤건영 · 소병훈 · 박 정 · 박상혁 · 조승래
정일영 · 허종식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 의안번호 : 397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 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제2조·제5조 및 제12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본인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조·제5조 및 제12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u>국정조사</u> 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국정조사</u> 등 <u>과</u> ----- ----- -----.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u>국정조사</u> 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 <u>국정조사</u> <u>등과</u> ----- ----- ----- ----- ----- ----- -----.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현행	개정안
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단서 신설> ② 의원 또는 <u>위원</u>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u>위원</u>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전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u>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	----- ----- ----- ----- ----- ----- ----- ----- ----- --. <u>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국회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u> ② -----<u>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본문에</u>-----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u>필요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요구한 경우</u>----- ----- ----- ----- ----- -----

현행 「국회법」 제128조¹⁾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²⁾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르면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적시에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원 또는 위원 본인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또는 위원의 서류등의 확보를 보다 원활히 하고 의정활동의 신속성·적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
-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한 불출석 등의 죄의 범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별 의원 또는 위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① 「국회법」상 대외적 행정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대표권⁴⁾을 갖는 의장·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사의 결정은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고, ③ 이에 따라 현행법도 타 기관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⁵⁾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4)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5)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자료제출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862).

[표-2] 현행 국회관계법상 자료 제출 요구 요건 비교

법 률	자료 제출 요구 요건
국회법	본회의 · 위원회 · 소위원회의 의결
	청문회, 국정감사 ·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 후 해당 기관에 요구
국감국조법	위원회 · 소위원회 · 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인사청문회법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참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표-3] 주요국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요건 비교⁶⁾

국 가	주 체	내 용
미국	(상원) 상임위, 소위원회	소환장에 의해 서신, 서적, 문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원) 위원회, 소위원회	서적 · 기록 · 서신 · 각서 · 문서 등의 제출을 소환장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요구
영국(하원)	공범안심사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의사규칙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여부를 각 위원회별로 달리 규정
일본	각 의원(議院)과 각 의원의 위원회	각 의원(議院) 또는 위원회가 심사 · 조사를 위해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

둘째, 벌칙규정의 처벌대상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 ① 개정안은 개별 의원 · 위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6) 이구형,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3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개별 의원·위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절한 경우⁷⁾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주무부 장관이 소명하여 공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⁸⁾를 처벌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법률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소명하여 제출을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정안은 ‘불출석 등의 죄’(불출석,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보고·서류 제출 요구 거절 등)의 징역형을 ‘국회모욕의 죄’(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거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여, 불출석의 죄보다 동행명령 거부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법상 법정형 체계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법정형 상향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음.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②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절한 경우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8)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4]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

구 분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동행명령 거부)
구성 요건	○ <u>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u> ○ <u>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u> ○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 <u>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u>	○ 증인이 <u>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u>,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법정형	<u>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 (개정) <u>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u>	<u>5년 이하의 징역</u>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⁹⁾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개별 의원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017

10) ○ 개별 의원 서류등 제출 요구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02	김정호의원	위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03	김정호의원	위원의 안전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3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104	김정호의원	위원이 안전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 발부
4	국감국조법 일부개정법률안	3105	김정호의원	위원의 국정감사·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불출석 등의 죄 법정형 상향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59	민형배의원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